

#### [서식 예] 구속적부심사청구서

#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

사 건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 등

피 의 자 ○ ○ ○ (주민등록번호: 111111 - 1111111)

주 거 00시 00길 00

구속장소 ○○경찰서 유치장

위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20○○. ○. ○. 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현재 ○○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이나, 피의자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심리하시어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## 청 구 취 지

"피의자 ○○○의 석방을 명한다"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### 청 구 이 유

1. 구속적부심사의 요건

가. 피의자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경찰 및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가



되어있으므로 죄증인멸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.

나. 피의자는 직업 및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도 주할 역려가 전혀 없습니다.

#### 2. 피의자의 생활환경

피의자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 부인 및 자녀들과 함께 주거지의 주택에서 살고 있으며. ○○시 ○○길에 소재한 "○○식당"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#### 3. 이 사건 발생 당일의 상황

- 가. 피의자는 ○○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건외 □□□은 공사현장의 목수반장으로 서 인부들의 식비로 피의자에게 금 1,600,000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. 위 □□□□ 은 피의자에게 우선 금 500,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 1,100,000원은 20○○. ○. 까지 주기로 했는데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주지 않은 상태이었습니다.
- 나. 피의자는 본 건 발생 당일 오전 ○시경 □□□□으로부터 잔금을 받기 위해 피의 자의 처인 사건외 김□□가 운전하는 화물트럭을 타고 □□□이 있는 공사현장에 갔습니다. 피의자와 김□□는 □□□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하다가 김□□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영업을 위해 그곳을 떠나고 피의자는 전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이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있는 사무실 쇼파 위에서 잠이들었습니다.
- 다. 당일 오전 ○○시경 사건외 황□□은 본인 소유의 본 건 전북○○다○○○○호 승용차를 타고 ○○식당 앞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기 때문에 차 열쇠를 열쇠구멍에 그대로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를 해 놓았습니다. 식당안에 피의자가 없자 피의자의 처인 김□□에게 전화를 해보니 공사현장에 있다고 하여 찾아가니 피의자가 자고 있어 피의자를 깨워 피의자와 같이○식당에 돌아왔습니다.
- 라. 위 황□□은 ○○식당의 칸막이 공사를 하고 있었고 피의자는 위 식당에서 자고 있었는데 당일 오후 ○시 ○○분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피의자가 연행된 것입니다.

#### 4. 피의자 구속의 부당성

가. 피의자는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 건 당일 ○○:○○경 ○○시 ○○동 ○○보쌈식당 앞에서부터 ○○동 ○○직업훈련원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



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합니다.

- 나. 피의자는 실제로 운전하다가 단속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것이 아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것입니다. 따라서 신고자의 진술 외에는 피의자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.
- 다. 그런데, 신고자는 위 □□□□으로서 처음 진술할 때는 '평소 안면이 있는 ○○ 식당 사장이 전북○○다○○○호 흰색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보았다'고 하 였으나(수사기록 제11면),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'누가 운전하는지는 못 보고 차량이 비틀거리는 것만 보았다, 차량 뒷번호는 봤는데 운전자는 안보여서 못 보았다,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지칭하지는 않았다, 당일 ○○시 ○○분경 차가 현장 앞에 있길래 우연히 번호판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 번호를 불러 준 것이다'(위 기록 제47면)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습니다.
- 라. 이에 비해 피의자를 체포하였던 경찰관 고□□은 체포당시 위 □□□이 피의자를 가리키면서 차량의 운전자로 지목했다고 진술하고 있어(위 기록 제60면) □□□의 진술과 배치되고 있습니다. 또한 □□□은 피의자가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장소에서 약 25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3층 건물에서 목격하였다고 하는데 그와 같이 근거리에서 차량번호도 전부 볼 수 있는 사람이 운전자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.
- 마. 이에 비하면 본 건 차량은 당일 오전 ○○시 이후에 계속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이었고 피의자는 그 시각 이후에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는 황□□의 진술은 일관되고 있습니다.
- 바. 또한,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은 시각이 본 건 당일 ○○:○○경이고 피의자가 체포된 시각은 같은 날 ○○:○○경인데 그 동안에 피의자가 운전을 마치고 주차를 한 다음 잠에 깊이 빠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듭니다.

#### 5. 결어

위와 같이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석방의 은전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.

### 첨 부 서 류

1. 구속영장사본



1. 변호인선임신고서

1통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위 피의자의 변호인 변 호 사 O O O (인)

# ○○지방법원○○지원 귀중



제출법원	사건 관할법원		
신청권자	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, 그 변호인,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 족, 형제자매,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형사소송법 214조의2
불복절차 및 기간	없음(형사소송법 214조의2 8항)		
구속사유	1.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.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.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단,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1항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음 (형사소송법 70조)		